

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6 선고 2020가단220699 판결 [위탁수수료 및 구상금 지급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웅

피고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임태호, 노종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형, 이지은

변론 종결2020. 11. 18.

판결 선고2020. 12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3,913,9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4. 9.부터 2020. 12. 16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5%는 피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6,885,9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판사박관근

별지